



제 1 장

변호사 현황



제1장 변호사 현황¹

1. 우리나라 변호사 제도 연혁과 변호사 수의 변화

가. 변호사 제도

1) 광무변호사법 제정

우리나라 최초의 변호사법은 1905년(광무 9년) 11월 8일 대한제국 법률 제5호로 제정된 「광무변호사법」이며, 이때부터 법률전문직인 변호사 제도가 형성되었다. 광무변호사법은 전문 35조로 그 내용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자, 변호사의 직권, 변호사회 등을 담고 있으며, 이와 함께 변호사시험을 위한 변호사시험규칙(법부령 제3호)도 제정되었는데, 동 규칙에 따라 1907년 6월 24일 대한제국 법부에서 최초의 변호사시험이 실시되어 6인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변호사’라는 호칭과 관련하여 이 법 제정 이전에는 ‘율사’, ‘대언인’ 등의 명칭이 주로 사용되었고, 1901년 제국신문에서 「변호사」라는 표기가 최초로 기록되었다. 당시 상황은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진 시기여서 대한제국의 법령이 일본의 간섭과 영향을 받아 만 들어지고 개편될 때였으므로, 변호사라는 호칭도 일본의 그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일본은 1890년 시행된 재판소구성법에서 변호사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함).

2) 1945년 해방 직후 변호사 제도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 당시 미군정청은 사법제도를 담당할 인원 부족을 이유로 1948년 5월 25일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미군장교 등 미국인 259명, 한국인 66명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였다. 이때 변호사 자격을 부여받은 한국인은 대부분 기존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나, 일부 비법조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항구적인 법조인 양성제도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47년 3월 29일 사법부령 제3호로 「조선변호사시험령」이 공포되었고, 동년 10월 제1회 시험이 시행되었다.

¹ 이 장의 내용은 ‘대한변협 50년사(대한변호사협회, 2002)’와 ‘변호사실무제요(대한변호사협회, 2006)’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3) 대한변호사협회의 창립

최초의 변호사회는 1907년 9월 23일 창립된 한성변호사회로, 각 지방에 분회를 두도록 되어 있었으나 당시 전국의 변호사 수가 10명을 넘지 않아 전국적인 변호사회 연합조직은 성립되지 않고 다만 '전조선 변호사대회'라는 이름으로 필요에 따라 회합이 이루어졌다.

1945년 11월 19일 광복과 더불어 설립된 미군정 시절 법무국령 제4호가 제정되어 기존의 모든 변호사회를 폐지하고 각 지역에 지방 분회를 두는 실질적인 전국 조직의 '조선변호사회'가 비로소 창설되었다. 조선변호사회는 조선한성재판부에 본사무실을 두고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각 두 번째 목요일, 조선한성재판소에서 중앙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후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되고, 같은 해 8월 15일 정부수립 후 1948년 9월 26일 법률 제51호로 법원조직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1949년 11월 7일 현재의 대한변호사협회 설치근거인 변호사법이 제정되어 명실공히 자유독립국가의 변호사법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1950년 6월 17일 새 변호사법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 창설을 위해 대법원 회의실에서 협회규약을 제정한 창립총회가 개최되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법무부의 인가를 받지 못하고, 그 후 1952년 7월 28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속개된 창립 총회에서 협회규약을 확정, 같은 해 8월 29일 법무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지금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나. 변호사 수 추이

1) 대한변호사협회 설립 이전 변호사 수 추이(1906년~1951년)

[매년 말 기준]

연도	개업변호사 수			연도	개업변호사 수		
	조선인	일본인	계		조선인	일본인	계
1906	3	자료 없음	-	1926	175	150	325
1907	17	자료 없음	-	1927	187	153	340
1908	20	자료 없음	-	1928	189	151	340
1909	41	29	70	1929	196	154	350
1910	51	30	81	1930	209	154	363
1911	59	37	96	1931	210	156	366
1912	73	50	123	1932	208	163	371
1913	91	60	151	1933	207	165	372
1914	97	71	168	1934	209	169	378
1915	94	68	162	1935	217	172	389
1916	94	72	166	1936	206	145	351
1917	94	74	168	1937	200	145	345
1918	95	74	169	1938	196	147	343
1919	97	90	187	1939	205	147	352
1920	105	97	202	1940	201	153	354
1921	102	101	203	1941	208	150	358
1922	120	110	230	1942	214	147	361
1923	149	121	270	1943	237	139	376
1924	154	135	289	1944	244	149	393
1925	166	143	309	1945	자료 없음	자료 없음	-

【출처】「대한변협 50년사」, 대한변호사협회, 2002

- 위 자료는 광무변호사법과 이후의 융희변호사법, 통감부 변호사규칙 및 조선총독부 변호사규칙과 조선변호사령에 의한 등록변호사 통계에 따라 개업변호사 수를 파악한 것임.
-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52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설립될 때까지 6·25전쟁 등 사회혼란으로 변호사 통계자료가 없음. 다만, 미군정시대(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48년까지)는 미군정청의 ‘Bar Admission Order No.1’ (1945년 11월 14일, 법무국지령 제1호)에 따른 등록변호사 수가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음.

[미군정청 ‘Bar Admission Order No.1’ 에 따른 등록변호사 수]

연도	미국인	한국인	합계(누적)
1945	78	46	124
1946	154	20	298
1948	27	0	325

2) 대한변호사협회 설립 이후 변호사 수 추이(1952년~2009년)

[매년 말 기준]
증감률[개업자] : (해당년-전년) × 100/전년

연도	등록자 ¹⁾	개업자 ²⁾	증감률(%)	연도	등록자 ¹⁾	개업자 ²⁾	증감률(%)
1952	807	자료 없음	·	1981	2,306	1,013	7.8
1953	903	자료 없음	·	1982	2,408	1,098	8.4
1954	965	280	·	1983	2,480	1,166	6.2
1955	1,001	293	4.6	1984	2,047	1,179	1.1
1956	1,047	303	3.4	1985	2,144	1,320	12.0
1957	1,069	364	20.1	1986	2,225	1,414	7.1
1958	1,091	361	-0.8	1987	2,312	1,521	7.6
1959	1,109	384	6.4	1988	2,445	1,666	9.5
1960	1,135	456	18.8	1989	2,575	1,803	8.2
1961	1,206	491	7.7	1990	2,741	1,983	10.0
1962	1,273	581	18.3	1991	2,984	2,258	13.9
1963	1,398	594	2.2	1992	3,157	2,450	8.5
1964	1,493	635	6.9	1993	3,360	2,685	9.6
1965	1,561	662	4.3	1994	3,503	2,852	6.2
1966	1,581	679	2.6	1995	3,731	3,078	7.9
1967	1,599	687	1.2	1996	3,623	3,188	3.6
1968	1,622	676	-1.6	1997	3,799	3,364	5.5
1969	1,707	702	3.8	1998	3,991	3,521	4.7
1970	1,755	719	2.4	1999	4,338	3,887	10.4
1971	1,787	748	4.0	2000	4,699	4,228	8.8
1972	1,812	745	-0.4	2001	5,136	4,618	9.2
1973	1,880	785	5.4	2002	5,595	5,073	9.9
1974	1,960	812	3.4	2003	6,150	5,586	10.1
1975	1,991	809	-0.4	2004	6,892	6,300	12.8
1976	2,021	819	1.2	2005	7,693	6,997	11.1
1977	2,034	811	-1.0	2006	8,429	7,602	8.6
1978	2,131	832	2.6	2007	9,280	8,143	7.1
1979	2,170	890	7.0	2008	10,169	8,877	9.0
1980	2,230	940	5.6	2009	11,016	9,612	8.3

1) 등록자는 변호사 개업자와 휴업자 모두를 말함. 단, 1983년까지 등록자 수는 개업, 휴업, 등록취소자 등을 모두 포함한 누적수치임.

2) 개업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개업신고를 한 후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함.

- 1981년 개업변호사 수가 최초로 1,000명을 넘었고, 2002년에는 5,000명, 2010년에는 10,000명 시대로 진입함(2010년 5월 말 기준 10,227명).
- 1981년부터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300명으로 증원되면서 변호사 등록 및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1982년 12월 31일 변호사법 개정으로 변호사 등록권이 법무부에서 대한변호사협회로 이관됨.
- 시대별 개업변호사 수의 증가율은 50년대 6.8%, 60년대 6.4%, 70년대 2.4% 등 70년대까지는 다소 정체되었으나, 경제성장에 따른 법률수요의 증가와 국민의 법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시기인 80년대 7.4%부터 90년대 7.8%, 2000년대에는 9.5%로 높게 기록됨.

3) '2010년 이후' 변호사 수 예상 추이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법 시험 (A)	선발 인원	1,000	800	700	500	300	300 ¹⁾ (추정)	300 ¹⁾ (추정)	100 ¹⁾ (추정)	100 ¹⁾ (추정)	시험 폐지	-	-	-
	신규 ²⁾ 법조인	1,000	1,000	1,000	1,000	800	700	500	300	300 (추정)	300 (추정)	100 (추정)	100 (추정)	0
법학 전문 대학원 (B)	입학 정원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신규 ³⁾ 법조인	0	0	0	1,000 (추정)	1,000 (추정)	1,000 (추정)	1,000 (추정)	1,000 (추정)	1,000 (추정)	1,000 (추정)	1,000 (추정)	1,000 (추정)	1,000 (추정)
배출규모 (C)=A+B		1,000	1,000	1,000	2,000 (추정)	1,800 (추정)	1,700 (추정)	1,500 (추정)	1,300 (추정)	1,300 (추정)	1,300 (추정)	1,100 (추정)	1,100 (추정)	1,000 (추정)
개업 변호사 수 ⁴⁾		9,612	10,312	11,012	12,412	13,672	14,862	15,912	16,822	17,732	18,642	19,412	20,182	20,952

1) 2014년 이후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임의로 추정한 것이며,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추후 별도로 책정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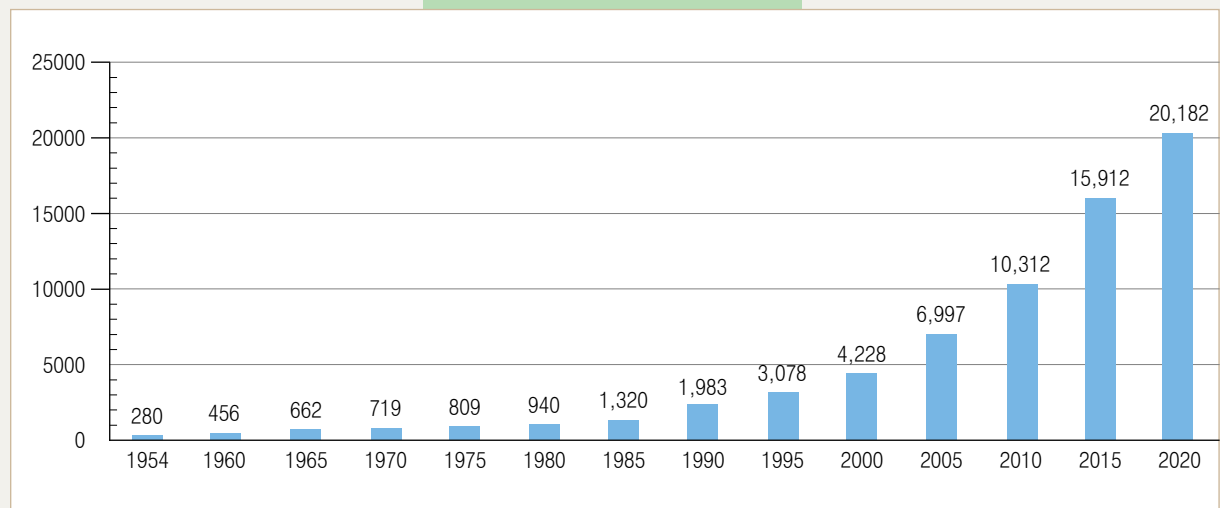
2) 사법시험 신규법조인 배출 연도는 합격자가 결정된 해의 다음 연도부터 시작되는 2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한 연도임.

3) 법학전문대학원 신규법조인 배출 연도는 3년의 교육과정이 끝난 다음 해로 산정하며, 그 수는 입학정원 대비 50% 합격률을 기준으로 추정함.

4) 연간 배출 법조인(C) 중 판·검사, 군법무관 임용자 등을 고려하여 배출 인원의 70%를 개업변호사로 파악함.

- 위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 개업변호사 수가 2만 명을 넘게 되고, 2009년 말 변호사 수(9,612명)의 약 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됨.

개업변호사 수 추이표



2. 변호사 자격시험 연혁

가. 대한제국 변호사시험(1907년~1908년)

1) 근거법령 : 광무변호사법(1905년 11월 8일 법률 제5호) - 변호사시험규칙(법부령 제3호)

2) 연도별 합격자 수

연도	회수	합격자(명)
1907	1	6
1908	2	4
총 계		10

【출처】「대한변협 50년사」, 대한변호사협회, 2002

- 우리나라 최초의 변호사시험은 광무변호사법 및 그에 따른 변호사시험규칙에 의거하여 실시된 대한제국 변호사시험임. 그러나 동 제도 시행 전 이미 '법관양성소'를 통하여 법조인의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광무변호사법 제2조는 '법관양성소에서 1년 6개월 이상을 판·검사 교관의 직무를 행한 자는 법부대신의 인가를 받아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이들의 변호사 자격을 인정하였음.
- 법관양성소(法官養成所, 1895년~1908년)는 재판소구성법(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 및 법관양성소규정(칙령 제49호)에 따라 조선 말기에 설립되어 대한제국 시기에 존속했던 대한제국 법부 산하의 국립 법률교육 기관으로, 한국에서 근대 사법제도의 시작을 연 기관 중 하나임. 1894년 갑오개혁으로 근대적 사법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관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법원인 평리원 안에 설치되었으나,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계기로 사실상 폐지되었다가 1904년 다시 개소하였음. 그러나 대한제국의 사법권이 박탈되면서 1909년 법부에서 학부로 소속이 바뀌고 명칭도 법학교로 바뀌면서 폐지됨.

[법관양성소 연도별 합격자 수]

연도	회수	합격자(명)
1895	1	47
1896	2	39
1904	3	28
1905	4	20
1907	5	22
1908	6	54
총 계		210

【출처】「법조인사보전」, 법조문화사, 1977

나. 대한제국 사법시험(1909년)

1) 근거법령 : 융희변호사법(1909년 4월 26일 법률 제18호) - 사법시험규칙(법부령 제4호)

2) 연도별 합격자 수

연도	회수	합격자(명)
1909	1	7
총 계		7

【출처】「대한변협 50년사」, 대한변호사협회, 2002

다. 조선변호사시험(1947년~1949년)

1) 근거법령 : 조선변호사시험령(1947년 3월 29일 사법부령 제3호)

2) 연도별 합격자 수

연도	회수	합격자(명)
1947	1	53
1948	2	71
1949	3	20
총 계		144

【출처】「법조인사보전」, 법조문화사, 1977

라. 고등고시 사법과(1949년~1963년)

1) 근거법령 : 고등고시령(1949년 8월 23일 대통령령 제174호) - 사법관시보의 임명·수습 및 고시규정(대통령령 제236호)

2) 연도별 합격자 수

연도	회수	합격자(명)	연도	회수	합격자(명)
1949	1	16	1958	10	50
1951	2	39	1959	11	24
1952	3	21	1960	12	31
1953	4	16	1961	13	110
	5	12	1962	14	50
1954	6	17		15	56
1955	7	30	1963	16	36
1956	8	108	총 계		667
1957	9	51			

【출처】법무부

마. 사법시험(1963년~현재)

1) 근거법령 : 사법시험령(1963년 5월 9일 각령 제1290호) ⇒ 사법시험법(2001년 3월 28일 법률 제6436호)

2) 연도별 합격자 수

연도	회수	합격자(명)	연도	회수	합격자(명)
1963	1	41	1985	27	298
	2	45	1986	28	300
1964	3	10	1987	29	300
	4	22	1988	30	300
1965	5	16	1989	31	300
1966	6	19	1990	32	298
1967	7	5	1991	33	287
	8	83	1992	34	288
1968	9	37	1993	35	288
1969	10	34	1994	36	290
1970	11	33	1995	37	308
	12	49	1996	38	502
1971	13	81	1997	39	604
1972	14	80	1998	40	700
1973	15	60	1999	41	709
1974	16	60	2000	42	801
1975	17	59	2001	43	991
1976	18	61	2002	44	998
1977	19	80	2003	45	906
1978	20	100	2004	46	1,009
1979	21	120	2005	47	1,001
1980	22	141	2006	48	994
1981	23	289	2007	49	1,011
1982	24	300	2008	50	1,005
1983	25	300	2009	51	997
1984	26	303	총 계		17,913

【출처】 법무부

바. 판·검사 특별임용시험(1952년, 1956년)

1) 근거법령 : 판사및검사특별임용시험법(1950년 12월 7일 법률 제170호)

2) 연도별 합격자 수

연도	회수	합격자(명)
1952	1	58
1956	2	35
총 계		93

【출처】「법조인사보전」, 법조문화사, 1977

사. 군법무관임용고시(1953년~1954년)

1) 근거법령 : 군법무관임용법(1952년 4월 24일 법률 제243호) - 군법무관전형령(대통령령 제717호)

2) 연도별 합격자 수

연도	월 일	회수	합격자(명)
1953	01.19	1	18
	05.23	2	38
	09.29	3	20
	12.20	4	16
1954	-	5	자료 없음
	-	6	자료 없음
총 계			92 + ?

【출처】「법무50년사」, 육군본부, 1996

- 군법무관임용고시는 군법무관임용법 제9조(부칙)에 의거하여 군법무과 장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당시 군법무과 장교에게 동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군법무관임용고시에 합격할 경우 동법에 의한 군법무관 자격이 부여되었음.
- 1954년에 제5, 6회 군법무관임용고시가 실시되었으나 관련 자료의 부재로 당시 합격자 수는 알 수 없지만, 동고시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총 131명으로 조사됨.

아. 군법무관임용시험(1967년~2005년)

1) 근거법령 : 군법무관임용법(1967년 3월 3일 법률 제1904호)

2) 연도별 합격자 수

연도	회수	합격자(명)	연도	회수	합격자(명)
1967	1	89	1994	11	40
1973	2	36	1996	12	27
1978	3	30	1998	13	24
1980	4	30	2000	14	46
1982	5	30	2001	15	26
1984	6	29	2002	16	25
1986	7	30	2003	17	22
1988	8	40	2004	18	13
1990	9	40	2005	19	12
1992	10	40	총 계		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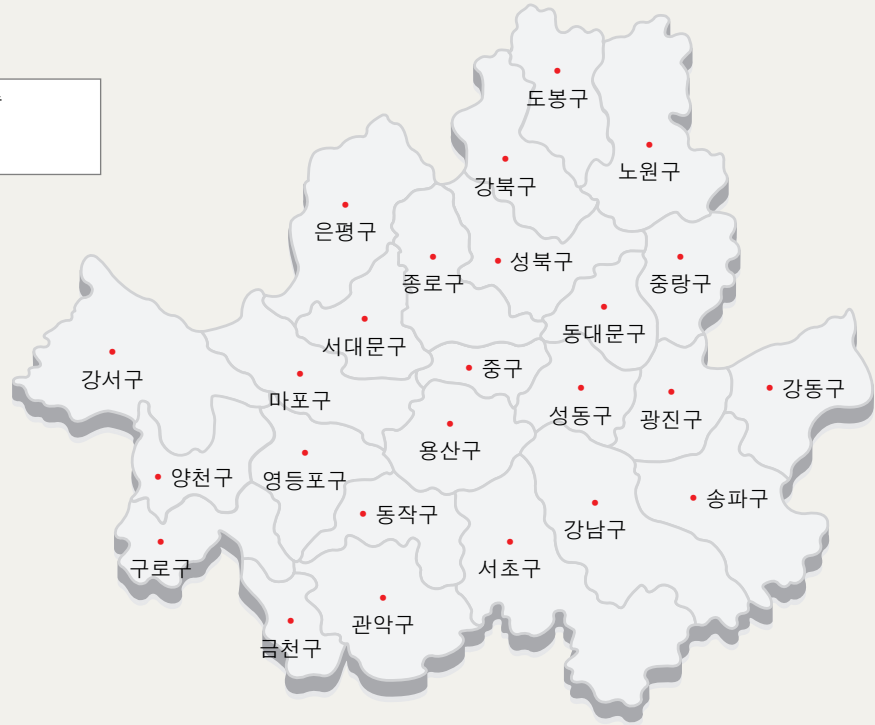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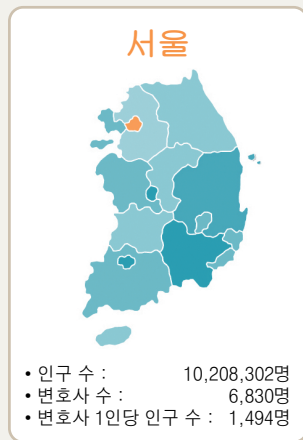
【출처】 법무부

- 군법무관임용시험은 부족한 군법무관을 충원하기 위하여 1967년 도입된 제도로써 사법시험과는 별도로 진행되었으며, 동 시험에 합격하여 군법무관시보로 실무수습을 마치고 실무고시에 합격한 자를 군법무관으로 임용하되 의무복무기간을 두어 동 기간을 마치는 자에 한하여 변호사 자격을 부여함.
-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사법시험 합격자 수의 증가로 2005년 폐지되었고, 이후 군법무관은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서 선발하고 있음.

3. 2009년 말 변호사 현황

가. 지역별 변호사 현황

2009년 말 기준 / 단위 : 명, () 여성 수
 변호사 수 : 9,612(1,013)명
 【출처】 인구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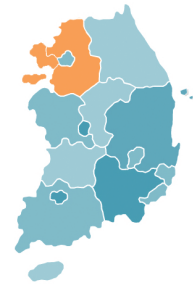
지역	법원 지원별	시군구	인구 수	변호사 수	변호사 1인당 인구 수
서울	서울 본원	종로구 중 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2,689,504	6,098 (736)	441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1,848,277	118(12)	15,663
	서부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1,416,067	115(18)	12,313

지역	법원 지원별	시군구	인구 수	변호사 수	변호사 1인당 인구 수
서울	남부	영등포구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금천구	2,146,831	400(81)	5,367
	북부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2,107,623	99(9)	21,289

- 변호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로 전체 변호사의 약 31%가 집중되어 있음(변호사 1인당 인구 수 143명).



경기·인천



경기북부

• 인구 수 : 2,998,329명
• 변호사 수 : 206명
• 변호사 1인당 인구 수 : 14,554명

경기중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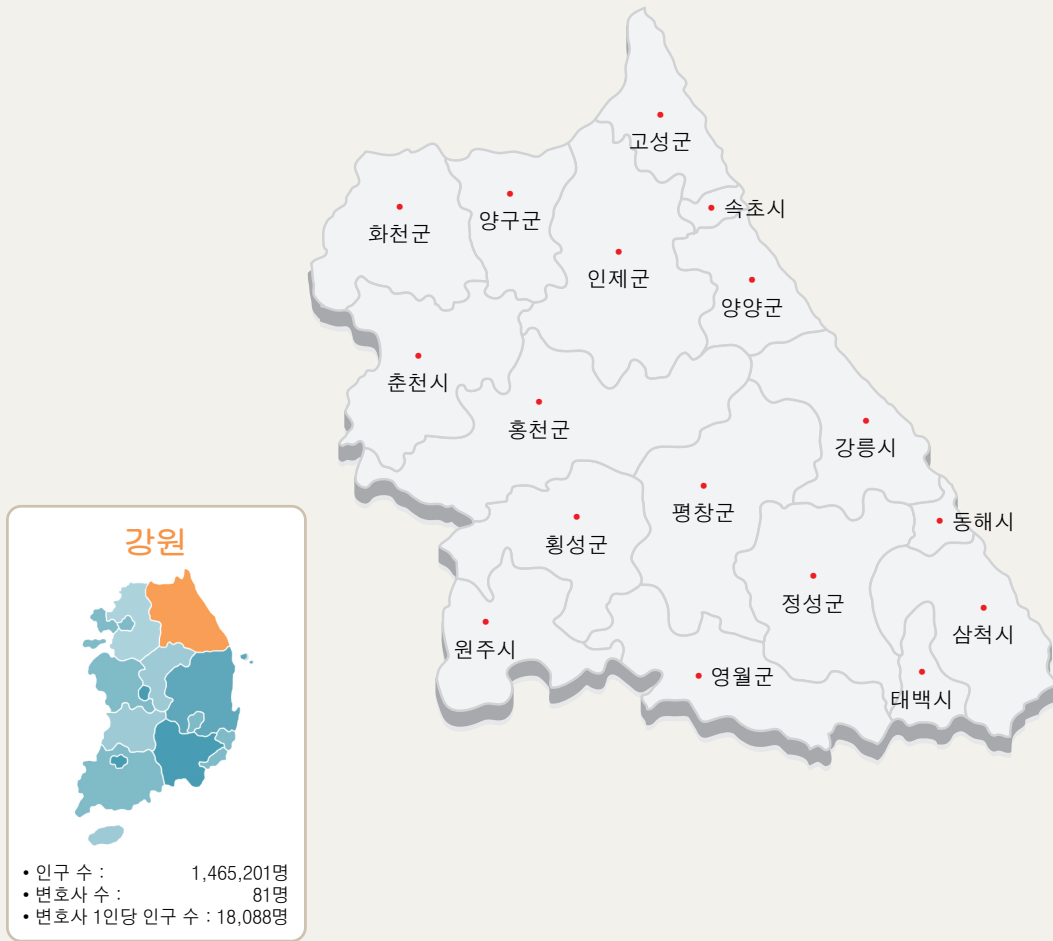
• 인구 수 : 7,414,201명
• 변호사 수 : 511명
• 변호사 1인당 인구 수 : 14,509명

인천

• 인구 수 : 3,806,328명
• 변호사 수 : 299명
• 변호사 1인당 인구 수 : 12,73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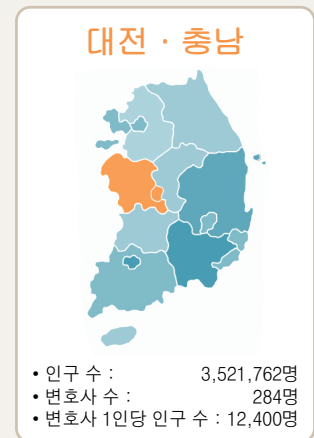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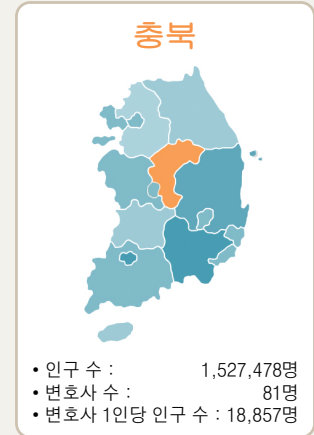
지역	법원 지원별	시군구	인구 수	변호사 수	변호사 1인당 인구 수
경 기 북 부	의정부 본원	의정부시	431,008	98(14)	4,398
		구리시	195,593	7(0)	27,941
		남양주시	525,211	9(0)	58,356
		동두천시	93,211	0	-
		포천시	158,931	0	-
		양주시	182,106	0	-
		가평군	57,564	0	-
		연천군	45,241	0	-
		철원군	47,669	0	-
	고양	고양시	938,784	85(11)	11,044
경 기 중 앙	수원 본원	파주시	323,011	7(1)	46,144
		수원시	1,073,149	183(17)	5,864
		오산시	159,734	4(0)	39,933
		용인시	839,204	13(1)	64,554
	안산	화성시	491,528	3(0)	163,842
		광명시	314,257	5(0)	62,851
		시흥시	397,912	8(1)	49,739
		안산시	705,346	82(14)	8,601

지역	법원 지원별	시군구	인구 수	변호사 수	변호사 1인당 인구 수
경 기 중 앙	안양	군포시	275,731	4(0)	68,932
		안양시	616,547	64(8)	9,633
		과천시	72,049	0	-
		의왕시	140,874	0	-
	성남	성남시	962,726	88(6)	10,940
		하남시	148,566	3(0)	49,522
		광주시	238,583	3(0)	79,527
	여주	이천시	197,496	3(0)	65,832
		여주군	108,088	15(0)	7,205
		양평군	91,450	2(0)	45,725
인 천	평택	평택시	410,042	31(0)	13,227
		안성시	170,919	0	-
	인천 본원	인천시	2,710,579	239(23)	11,341
		김포시	225,805	8(0)	28,225
	부천	부천시	869,944	52(7)	16,7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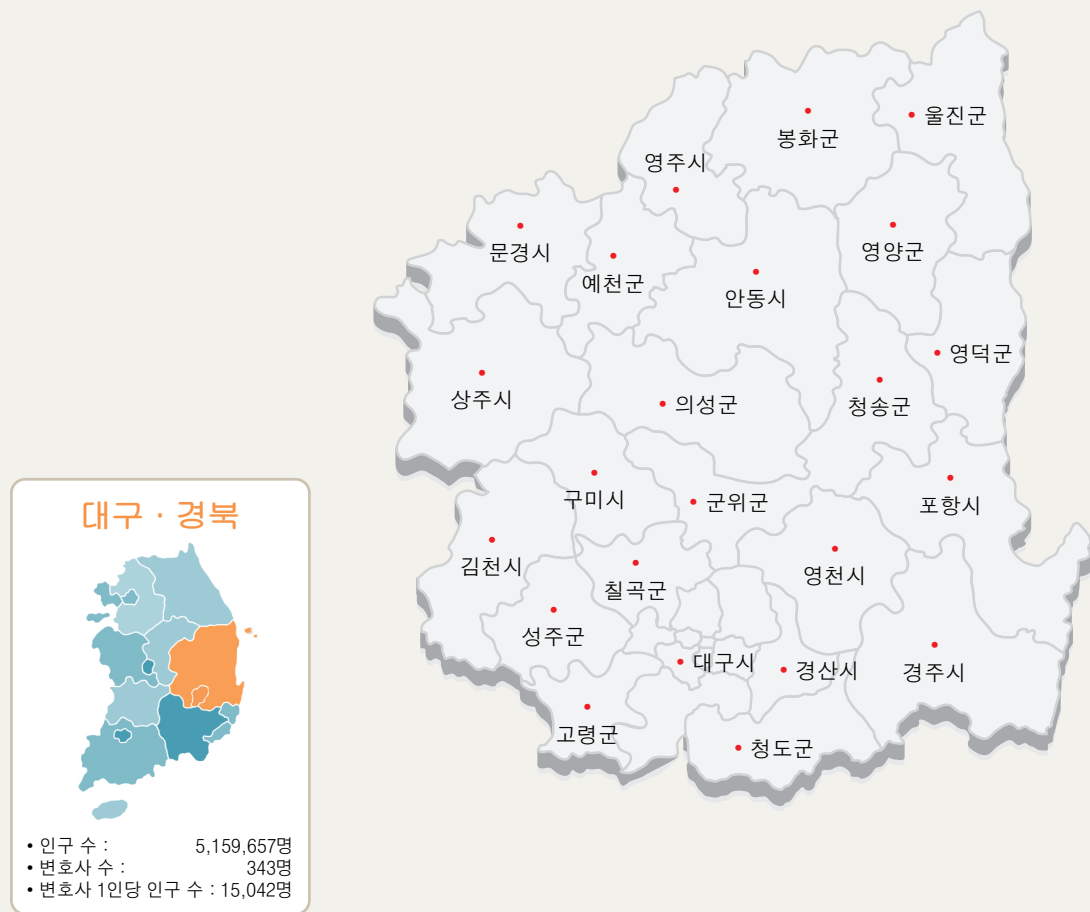
지역	법원 지원별	시군구	인구 수	변호사 수	변호사 1인당 인구 수
강 원	춘천 본원	춘천시	264,849	25(2)	10,593
		화천군	24,216	0	—
		양구군	21,323	0	—
		인제군	31,452	0	—
		홍천군	69,606	0	—
	강릉	강릉시	217,464	21(1)	10,355
		동해시	95,271	0	—
		삼척시	71,935	0	—
	원주	원주시	307,882	23(1)	13,386
		횡성군	44,121	0	—
	속초	속초시	83,822	7(0)	11,974
		양양군	27,957	0	—
		고성군	30,272	0	—

지역	법원 지원별	시군구	인구 수	변호사 수	변호사 1인당 인구 수
강 원	영월	영월군	40,265	5(0)	8,053
		평창군	43,634	0	—
		정선군	40,708	0	—
		태백시	50,424	0	—



지역	법원 지원별	시군구	인구 수	변호사 수	변호사 1인당 인구 수
충 북	청주 본원	청주시	643,161	55(2)	11,693
		증평군	33,164	0	-
		진천군	61,456	1(0)	61,456
		청원군	149,783	0	-
		보은군	34,845	0	-
		괴산군	36,775	0	-
	충주	충주시	206,613	12(1)	17,217
		음성군	89,716	1(0)	89,716
	제천	제천시	135,580	9(0)	15,064
		단양군	31,842	0	-
	영동	영동군	50,426	3(0)	16,808
		옥천군	54,117	0	-
대 전	대전 본원	대전시	1,484,180	186(12)	7,979
		연기군	79,482	1(0)	79,482
		금산군	56,220	0	-

지역	법원 지원별	시군구	인구 수	변호사 수	변호사 1인당 인구 수
대 전 · 충 남	홍성	홍성군	87,631	12(0)	7,302
		예산군	87,163	0	-
		보령시	106,754	0	-
		서천군	60,066	0	-
	공주	공주시	124,172	2(0)	62,086
		청양군	32,613	0	-
	논산	논산시	127,097	5(0)	25,419
		계룡시	42,760	0	-
		부여군	75,564	0	-
	서산	서산시	158,886	15(0)	10,592
		당진군	138,798	1(0)	138,798
		태안군	63,095	0	-
	천안	천안시	540,832	59(1)	9,166
		아산시	256,449	3(0)	85,4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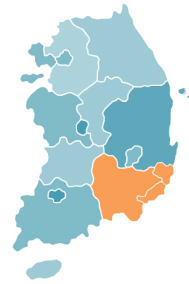


지역	법원 지원별	시군구	인구 수	변호사 수	변호사 1인당 인구 수
대구	대구 본원	대구시	2,489,781	260(6)	9,576
		경산시	236,459	0	—
		영천시	103,115	0	—
		성주군	45,616	0	—
		고령군	34,535	0	—
		청도군	44,279	0	—
		칠곡군	117,288	0	—
	안동	안동시	167,432	11(0)	15,221
		영주시	113,309	0	—
		봉화군	34,297	0	—
	경주	경주시	267,466	13(0)	20,574
		포항시	509,475	28(1)	18,195
	김천	울릉군	10,325	0	—
		울진군	52,529	0	—
		김천시	135,918	12(0)	11,326
		구미시	396,419	11(0)	36,038

지역	법원 지원별	시군구	인구 수	변호사 수	변호사 1인당 인구 수
대구	상주	상주시	106,208	5(0)	21,241
		문경시	76,645	0	—
		예천군	47,306	0	—
	의성	의성군	59,109	1(0)	59,109
		군위군	24,966	0	—
		청송군	26,917	0	—
	영덕	영덕군	41,710	2(0)	20,855
		영양군	18,553	0	—



울산 · 경남 · 부산



울산

- 인구 수 : 1,365,253명
- 변호사 수 : 95명
- 변호사 1인당 인구 수 : 14,371명

경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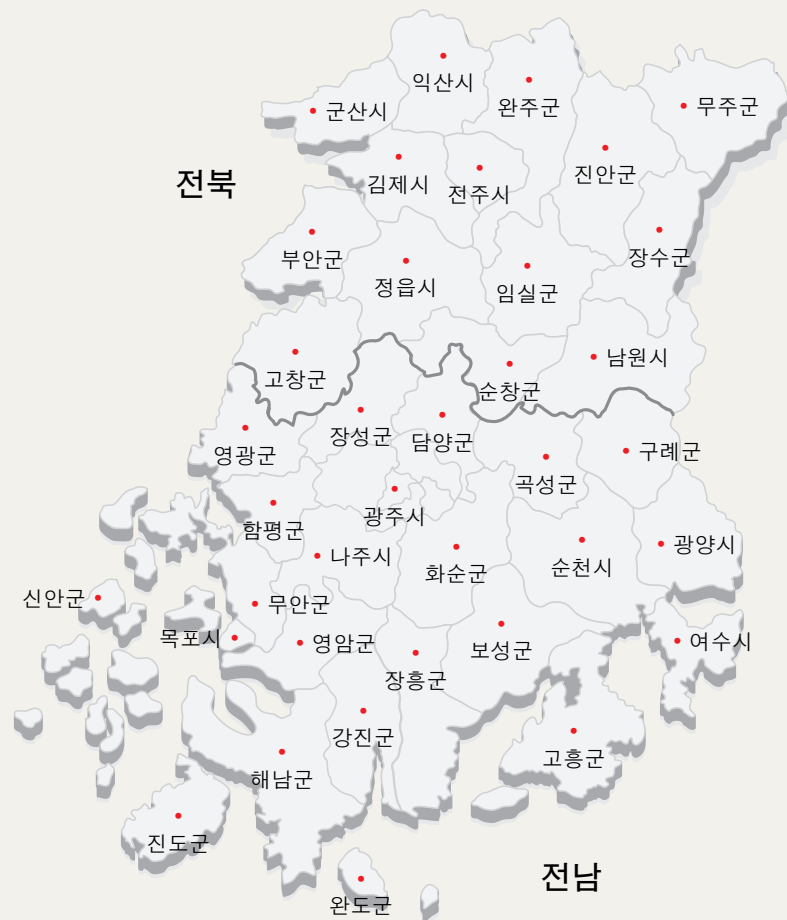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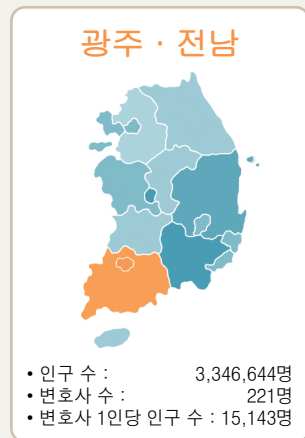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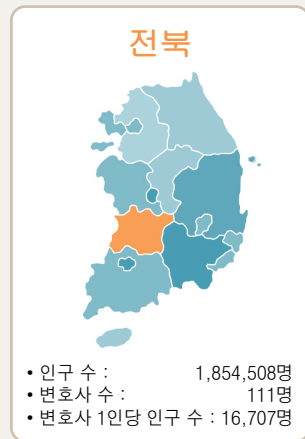
- 인구 수 : 2,999,789명
- 변호사 수 : 146명
- 변호사 1인당 인구 수 : 20,546명

부산

- 인구 수 : 3,543,030명
- 변호사 수 : 368명
- 변호사 1인당 인구 수 : 9,62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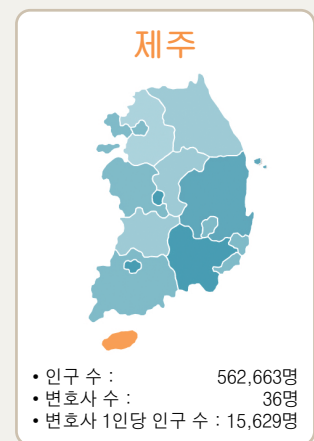
지역	법원 지원별	시군구	인구 수	변호사 수	변호사 1인당 인구 수
울 산	울산	울산시	1,114,866	93(5)	11,987
		양산시	250,387	2(0)	125,193
경 남	창원 본원	창원시	502,727	87(4)	5,778
		마산시	406,307	2(0)	203,153
		진해시	171,407	2(0)	85,703
		김해시	492,413	8(0)	61,551
		함안군	66,582	0	—
		의령군	30,496	0	—
		진주시	331,720	22(0)	15,078
	진주	사천시	112,724	0	—
		남해군	50,244	0	—
		하동군	52,010	0	—
		산청군	34,921	0	—
	통영	통영시	137,415	12(0)	11,451
		고성군	57,100	0	—
		거제시	225,522	5(0)	45,104

지역	법원 지원별	시군구	인구 수	변호사 수	변호사 1인당 인구 수
경 남	밀양	밀양시	110,170	4(0)	27,542
		창녕군	61,252	1(0)	61,252
	거창	거창군	63,180	3(0)	21,060
		합천군	52,973	0	—
부 산	부산	부산시	3,543,030	368(11)	9,627



지역	법원 지원별	시군구	인구 수	변호사 수	변호사 1인당 인구 수
전 북	전주 본원	전주시	635,007	67(3)	9,477
		김제시	94,770	0	-
		완주군	83,885	0	-
		임실군	30,703	0	-
		진안군	27,558	0	-
		무주군	25,811	0	-
	군산	군산시	266,922	21(0)	12,710
		익산시	306,669	11(0)	27,879
	정읍	정읍시	121,545	9(0)	13,505
		고창군	60,102	0	-
		부안군	60,204	0	-
	남원	남원시	87,675	3(0)	29,225
		순창군	30,179	0	-
		장수군	23,478	0	-
광 주	광주 본원	광주시	1,433,640	163(3)	8,795
		나주시	90,875	0	-
		담양군	47,286	0	-
		곡성군	32,084	0	-
		화순군	69,675	0	-

지역	법원 지원별	시군구	인구 수	변호사 수	변호사 1인당 인구 수
광 주	광주 본원	영광군	57,037	0	-
		장성군	46,214	0	-
	목포	목포시	244,339	15(0)	16,289
		신안군	45,294	0	-
		무안군	72,417	0	-
		영암군	59,837	0	-
		함평군	37,089	1(0)	37,089
	장흥	장흥군	42,097	2(0)	21,048
		강진군	41,164	0	-
	순천	순천시	269,516	31(1)	8,694
		여수시	293,546	2(0)	146,773
		광양시	143,461	1(0)	143,461
		구례군	27,518	0	-
		고흥군	75,127	0	-
		보성군	49,048	0	-
	해남	해남군	81,148	6(0)	13,524
		완도군	54,301	0	-
		진도군	33,931	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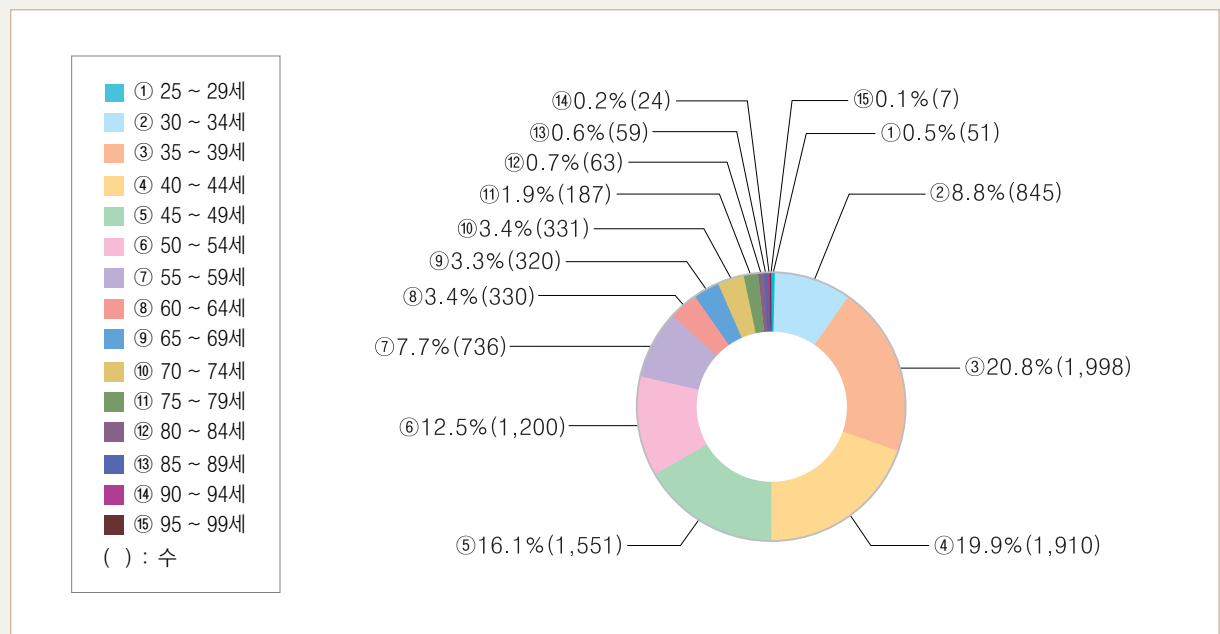


지역	법원 지원별	시군구	인구 수	변호사 수	변호사 1인당 인구 수
제주	제주	제주도	562,663	36(0)	15,629

나. 연령별 변호사 분포

[2009년 말 기준 / 총 9,612명]
() : %

연령	수	연령	수	연령	수	연령	수	연령	수
25~29세	51 (0.5)	40~44세	1,910 (19.9)	55~59세	736 (7.7)	70~74세	331 (3.4)	85~89세	59 (0.6)
30~34세	845 (8.8)	45~49세	1,551 (16.1)	60~64세	330 (3.4)	75~79세	187 (1.9)	90~94세	24 (0.2)
35~39세	1,998 (20.8)	50~54세	1,200 (12.5)	65~69세	320 (3.3)	80~84세	63 (0.7)	95~99세	7 (0.1)



- 전체 변호사의 연령별 분포는 35~39세가 가장 큰 비중(20.8%)을 차지하고, 그 다음 40~44세(19.9%), 45~49세(16.1%) 순이며, 젊은 층에 속하는 25~29세는 0.5%, 30~34세는 8.8%를 기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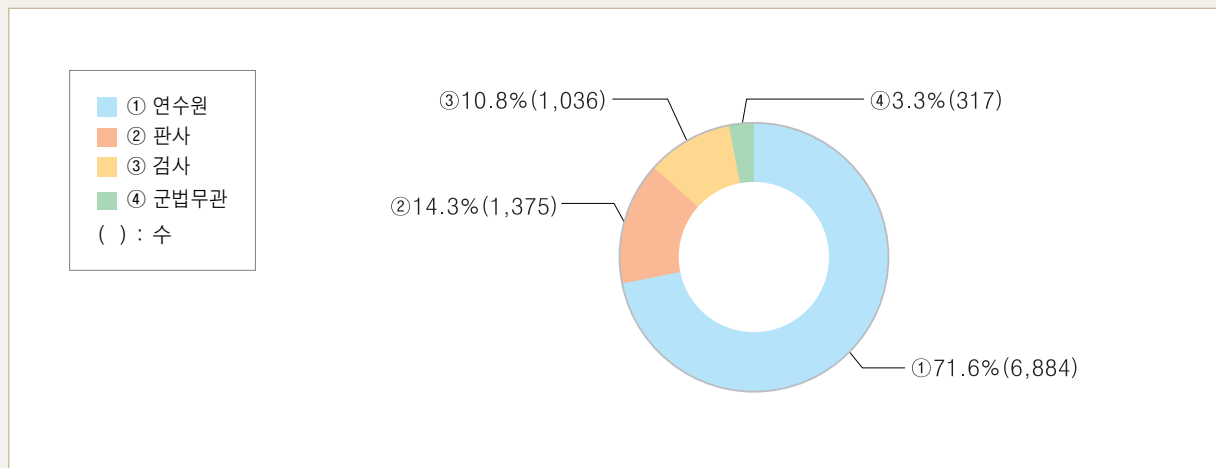
다. 경력별 변호사 분포

1) 출신별

[2009년 말 기준 / 총 9,612명]
() : %

연수원*	판사	검사	군법무관	계
6,884(71.6)	1,375(14.3)	1,036(10.8)	317(3.3)	9,612(100)

*연수원을 수료하고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



2) 판사 출신자 최종 직위

평판사	지법부장	고법부장	고등지법원장	대법관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헌법재판관	계
620	480	69	122	56	4	4	20	1,375

3) 검사 출신자 최종 직위

평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고등검사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계
608	222	45	79	49	14	19	1,036

● 전체 변호사 중 판·검사 경력자는 판사 14.3%, 검사 10.8%의 비율을 차지함.

4. 지방변호사회별 변호사 수

가. 변호사 수 추이(개업변호사 기준)

[매년 말 기준]

연도	서울지방법변호사회					경기 북부	인 천	경기 중앙	강 원	충 북	대 전	대 구	부 산	울 산	경 남	광 주	전 북	제 주	계
	서울	제1	제2	수도	소계														
1961	207	104			311					5	16	46	50			45	18		491
1962	280	105			385				6	5	18	49	53			44	15	6	581
1963	자료 없음																		
1964	자료 없음																		
1965	325	144			469				8	5	13	43	62			39	17	6	662
1966	자료 없음																		
1967	자료 없음																		
1968	304	165	7		476				8	6	17	42	63			40	18	6	676
1969	303	165	9	24	501				10	4	19	41	65			38	18	6	702
1970	296	187	9	29	521				9	4	18	43	65			36	19	4	719
1971	302	204	9	28	543				11	5	18	42	70			34	19	6	748
1972	273	202	11	53	539				9	5	16	43	73			38	15	7	745
1973	281	222	11	41	555				11	6	27	45	83			36	15	7	785
1974	303	252	1		556				13	8	30	51	89			42	16	7	812
1975	314	236			550				13	11	30	53	85			42	18	7	809
1976	311	257			568				11	10	24	51	85			41	21	8	819
1977	301	257			558				14	8	24	54	85			39	21	8	811
1978	302	257			559				12	10	33	55	92			39	24	8	832
1979	310	266			576				13	15	36	62	100			48	30	10	890
1980	302	280			582			38	14	14	37	68	102			44	31	10	940
1981	641				641			56	12	9	37	70	103			41	33	11	1,013
1982	704				704			57	13	11	37	75	112			47	31	11	1,098
1983	747				747		28	60	14	13	30	72	115			48	29	10	1,166
1984	770				770		26	31	13	15	32	73	109		19	52	29	10	1,179
1985	867				867		32	37	15	16	39	80	114		21	58	31	10	1,320
1986	921				921		32	42	16	19	46	84	122		27	62	32	11	1,414
1987	986				986		38	55	20	19	50	85	126		25	73	33	11	1,521
1988	1,080				1,080		46	65	21	21	51	93	146		27	72	32	12	1,666
1989	1,158				1,158		50	74	23	25	60	102	156		29	77	38	11	1,803
1990	1,253				1,253		57	79	27	27	64	128	168		39	83	47	12	1,984
1991	1,423				1,423		59	88	32	32	77	148	194		41	96	53	15	2,258
1992	1,546				1,546		66	99	32	32	87	166	204		43	102	55	18	2,450
1993	1,703				1,703		70	117	35	34	97	179	212		51	114	56	17	2,685
1994	1,803				1,803		76	124	34	36	104	188	228		60	122	59	18	2,852
1995	1,896				1,896		103	145	42	41	117	208	240		76	127	65	19	3,079
1996	1,942				1,942		105	156	50	48	124	217	242		84	133	68	19	3,188
1997	2,044				2,044		107	169	55	52	140	223	253		90	136	71	24	3,364
1998	2,139				2,139		112	183	54	53	149	239	219	36	93	146	74	24	3,521
1999	2,380				2,380		121	200	57	58	162	264	235	40	102	160	81	27	3,887
2000	2,663				2,663		122	222	55	61	161	275	246	42	107	163	86	25	4,228
2001	2,979				2,979		129	243	59	62	167	288	253	47	113	162	90	26	4,618
2002	3,318				3,318		147	301	59	64	171	293	269	48	117	167	92	27	5,073
2003	3,701				3,701		183	327	65	68	186	303	286	52	122	178	89	26	5,586
2004	4,141				4,141	139	211	350	65	71	205	321	302	59	131	186	92	27	6,300
2005	4,717				4,717	145	242	365	66	71	218	329	319	69	136	193	98	29	6,997
2006	5,219				5,219	156	258	394	70	76	225	331	328	71	136	210	100	29	7,603
2007	5,661				5,661	166	276	422	74	74	241	336	328	77	138	213	107	30	8,143
2008	6,272				6,272	186	278	471	75	73	259	332	339	87	147	213	109	36	8,877
2009	6,830				6,830	206	299	511	81	81	284	343	368	95	146	221	111	36	9,612

[지방변호사회 명칭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인가일	변경 전	변경 후	인가일
의정부	경기북부	2008.09.11.	청주	충북	2006.12.27.
수원	경기중앙	2010.01.21.	창원	경남	2006.03.15.
춘천	강원	2006.09.12.	전주	전북	2007.01.03.

나. 등록자 수 추이

연도	서울	경기북부	인천	경기중앙	강원	충북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계
1961 ~ 1999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2000	293	-	6	19	3	3	4	17	22	2	5	10	10	2	396
2001	367	-	7	26	3	1	12	16	16	4	4	6	3	0	465
2002	393	-	12	33	2	2	5	10	15	3	4	10	2	0	491
2003	444	-	35	28	3	5	16	11	23	2	5	12	1	0	585
2004	563	24	36	46	4	5	23	19	24	8	8	13	5	2	780
2005	640	23	39	33	2	4	21	17	28	11	11	12	7	2	850
2006	614	13	35	36	4	8	10	13	12	1	5	22	5	0	778
2007	728	16	33	41	3	3	20	9	17	7	7	10	9	1	904
2008	774	22	12	44	4	3	15	10	13	6	3	7	8	1	922
2009	688	17	33	48	3	8	21	8	27	5	4	7	5	0	874

5. 주요 국가 변호사 현황

[개업자 기준 / 단위 :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대한민국	인구	48,021,543	48,229,948	48,386,823	48,583,805	48,782,274	48,991,779	49,268,928	49,540,367	49,773,145
	변호사 수	5,136	5,595	6,150	6,892	6,997	7,603	8,143	8,895	9,612
	변호사 1인당 인구수	9,349	8,620	7,867	7,049	6,971	6,443	6,050	5,569	5,178
일본	인구	126,919,288	127,291,000	127,435,000	127,619,000	127,687,000	127,756,815	127,770,000	127,771,000	127,078,679
	변호사 수	18,246	18,851	19,522	20,240	21,205	22,056	23,154	25,062	28,796
	변호사 1인당 인구수	6,956	6,752	6,528	6,305	6,022	5,792	5,518	5,098	4,413
미국	인구	276,298,000	276,298,000	284,796,887	288,368,698	293,655,404	296,410,404	296,410,404	299,398,484	307,212,123
	변호사 수	974,950	972,722	981,590	1,006,804	1,006,783	1,026,356	1,041,262	1,066,536	1,180,386
	변호사 1인당 인구수	283	284	290	286	292	289	285	281	260
영국	인구	52,690,000	52,943,000	52,084,000	52,478,000	52,794,000	53,045,000	53,390,300	53,728,800	53,691,000
	Solicitor (①)	86,603	89,045	92,752	96,757	100,938	104,543	108,407	112,433	115,475
	Barrister (②)	10,334	10,747	11,248	11,564	11,818	12,034	12,058	12,136	12,241
	총수 (①+②)	96,937	99,792	104,000	108,321	112,756	116,577	120,645	124,569	127,716
	변호사 1인당 인구수	544	531	501	484	468	455	443	431	420
프랑스	인구	58,518,748	58,520,688	58,518,395	59,862,000	59,862,000	60,863,000	61,538,322	61,538,322	64,057,792
	변호사 수	31,718	32,036	33,540	40,233	43,403	45,753	47,765	48,461	50,314
	변호사 1인당 인구수	1,845	1,827	1,745	1,488	1,379	1,330	1,288	1,270	1,273
독일	인구	82,163,000	82,259,500	82,474,729	82,517,958	82,531,671	82,501,000	82,438,000	82,314,906	82,329,758
	변호사 수	116,305	121,420	126,793	132,569	138,104	142,830	146,910	150,377	153,251
	변호사 1인당 인구수	706	677	650	622	597	578	561	547	537

【출처】 대한민국 [인구-통계청 / 변호사 수-대한변호사협회]

영 국 [인구-영국통계청 / 변호사 수-Solicitor: The Law Society of England & Wales, Barrister: The General Council of the Bar]

일 본 [인구-일본총무성 통계국 / 변호사 수-일본변호사연합회(Japan Federation of Bar Associations)]

프 랑 스 [인구-프랑스통계청 / 변호사 수-프랑스변호사협회(Association Francaise Des Avocats)]

미 국 [인구-미국통계국 / 변호사 수-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독 일 [인구-독일통계청 / 변호사 수-독일변호사협회(Deutscher Anwaltverein)]

- 우리나라 변호사 1인당 인구 수는 2009년 기준으로 5,178명임. 그러나, 변호사 수 예상추이(6페이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이 정체증임을 전제로 2020년 변호사 1인당 인구 수는 2,466명 정도로 현재의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함.